

● 제321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3. 12. 21.

운 영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**[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**

### **I. 조례안 개요**

#### **1. 제안자 및 제안경과**

- 가. 제안자 : 신복자 의원 외 28명 공동발의
- 나. 제안일 : 2023. 10. 9.
- 다. 회부일 : 2023. 10. 23.
- 라. 의안번호 : 1282

#### **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초선의원은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원 구성, 추가경정예산 심사,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, 임기 개시 전까지 의회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개시 직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.
- 특히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특성상 의정의 연속성,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.
- 한편,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(2023.9.14.).

- 이에 개정안은 의원당선인을 기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초선의원이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회의실습 등 의정연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의원당선인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의 적용범위에 포함함 (안 제2조제1호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직선거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10.26. ~ 2023.10.30.

나) 예고결과 : 없음

2) 소관부서 의견조회: 원안동의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병수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(이하 “의원당선인”)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초선의원이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 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회의실습 등 의정연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2 의원당선인을 교육연수 적용범위에 포함 (안 제2조제1호)

- 개정안은 제2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의회의원”에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.

#### <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. 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 2. (생략)	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. 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  2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본원칙)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·발굴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	제3조(기본원칙)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·발굴 시행하고

② ~ ⑥ (생략)	<u>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</u>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

-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구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주민의 의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.
- 사회와 지방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-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. 지방의회의 제6기부터 제9기까지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, 지방의회의 초선의원 평균 비율이 광역의회의 경우 66%, 기초의회의 경우 53%를 상회함.

#### <지방의회의원 선수 현황>

(단위 : 명(%))

구분		의원정수	초선	2선	3선	4선 이상
제9기 (2022.7~ 2026.6)	광역	872	594 (68.1)	215 (24.7)	47 (5.4)	16 (1.8)
	기초	2,987	1,666 (55.8)	861 (28.9)	313 (10.5)	147 (4.9)
제8기 (2018.7~ 2022.6)	광역	829	615 (74.2)	136 (16.4)	68 (8.2)	10 (1.2)
	기초	2,927	1,717 (58.7)	721 (24.6)	340 (11.6)	149 (5.0)
제7기 (2014.7~ 2018.6)	광역	794	433 (54.5)	271 (34.1)	71 (8.9)	19 (2.4)
	기초	2,898	1,460 (50.4)	916 (31.6)	376 (13)	146 (5)
제6기 (2010.7~ 2014.6)	광역	762	529 (69.4)	166 (21.8)	58 (7.6)	9 (1.2)
	기초	2,512	1,282 (51.0)	847 (33.7)	274 (10.9)	109 (4.3)

자료: 국회 행정안전위원회,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」, 2023

- 마찬가지로, 서울특별시의회의 제8대부터 제11대까지의 선수현황을 살펴보면, 초선의원의 비율은 제9대를 제외하고 70%를 넘음.

**<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수 현황>**

(단위 : 명(%))

구분	의원정수	초선	2선	3선	4선 이상
제11대	111	82 (73.2)	24 (21.0)	3 (2.7)	2 (1.8)
제10대	110	81 (73.6)	16 (14.5)	12 (10.9)	1 (0.9)
제 9대	106	50 (47.2)	46 (43.3)	6 (5.6)	4 (3.7)
제 8대	114	95 (83.3)	13 (11.4)	5 (4.3)	1 (0.8)

자료: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

- 이러한 특징 가운데, 초선의원은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원 구성, 추가경정예산심사,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재선 이상 의원보다 의회조직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직무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계가 있음.
- 지방의회 구성의 높은 유동성에 따라 발생하는 의정의 연속성·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, 의원들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.<sup>1)</sup>
- 이에 개정안은 초선의원이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, 회의 실습 등 의정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.
- 한편, 「지방자치법」이 '23.9.14. 일부개정되어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.

1) 국회입법조사처, 「지방의회 교육훈련 현황과 과제」, 2018

**<지방자치법 제46조>**

개정 전	개정 후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(생략) ② 지방의회는 소속 <u>의원들이</u>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_____ _____

- 동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지방의회의 노력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.
- 또한, 개정안이 적용대상으로 두고자 하는 의원당선인의 범위를 “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”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과 모순·충돌하지 않으므로 법체계상 타당함.
- 소관 부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으로,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등의 근거가 명확해진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.
- 다만, 조례가 개정될 경우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당선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- 현행 지방의회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초선의원은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반면, 다선의원은 실무교육보다 지방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통해 어젠다를 장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선수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하여야 하는 의견이 있음.<sup>2)</sup>

---

2) 국회입법조사처, 「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」, 2022, p.55.



### 3 종합 의견

-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의 적용대상에 의원당선인을 포함하여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 전부터 교육연수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- 특히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지방의회 현실 등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은 이들의 교육연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나아가 의정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데 입법적 의의가 있음.
- 또한,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, 적용대상의 범위가 상위법과 모순·충돌하지 않으므로 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원당선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여 입법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.

담당 연락처

02-2180-7691